
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(양부남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99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18.

발 의 자 : 양부남 · 조계원 · 정태호
정준호 · 복기왕 · 김한규
김문수 · 윤준병 · 이정문
염태영 · 박정현 · 박균택
전진숙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 이러한 상황은 한 번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고 피해가 매우 큰 만큼, 사후 보상보다 사전 예방과 조기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함.

현행 제도상 ‘요양급여’는 치료비·약제비·입원비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임. 그런데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는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, 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요양급여가 불승인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.

그러나 요양급여 청구 및 조사 과정에서 대상자의 정신적 위험 상태나 자살 위험성이 사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, 공무상 요양이 최종적으로 불승인되더라도 필요한 보호조치와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 현재는 이러한 고위험군에 대한 별도의 보호 체계

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.

이에 요양급여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살 등 위험성이 확인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. 이를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대상자를 고위험군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, 인사혁신처는 이를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상담·치료 연계 등 필요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46조의7 신설).
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1417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6조의7(자살예방을 위한 긴급조치)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기관장은 제8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한 공무원이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(이하 “고위험군”이라 한다)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연계
2.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등의 지원
3. 그 밖에 자살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

② 심의회는 제6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에 관한 심의 중 심의 대상 공무원이 고위험군이라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③ 심의회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제1항에 따른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위험군에 대한 긴급조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.

⑤ 자살예방을 위한 긴급조치에 필요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법률 제21417호 공무원 재해보상 법 일부개정법률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법률 제21417호 공무원 재해보상 법 일부개정법률</p> <p><u>제46조의7(자살예방을 위한 긴급 조치)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기관장은 제8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한 공무원이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 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(이하 “고위험군”이라 한다)이라고 판 단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연계</u> <u>2.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등의 지원</u> <u>3. 그 밖에 자살위험 예방을 위 하여 필요한 조치</u> <p><u>② 심의회는 제6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에 관한 심의 중 심의 대상 공무 원이 고위험군이라고 판단할</u></p>

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③ 심의회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제1항에 따른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위험군에 대한 긴급조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.

⑤ 자살예방을 위한 긴급조치에 필요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